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
----------	----

2018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윤희천)

1.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 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관련법령
 - (공통) 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 사업

-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가족 양립 문화 조성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보육, 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을 위한 역량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서울여성의 경제력 강화, 체감하는 성주류화, 여성안전과 사회통합, 서울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함)’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임.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고 예산 심의에 앞선 예산편성 단계에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임.

2 여성가족재단 설립개요 및 운영현황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가족 재단조례』”라 함)를 근거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02년 설립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16년째 운영되고 있음.
- 「여성가족재단조례」제3조에 따르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사업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사업 및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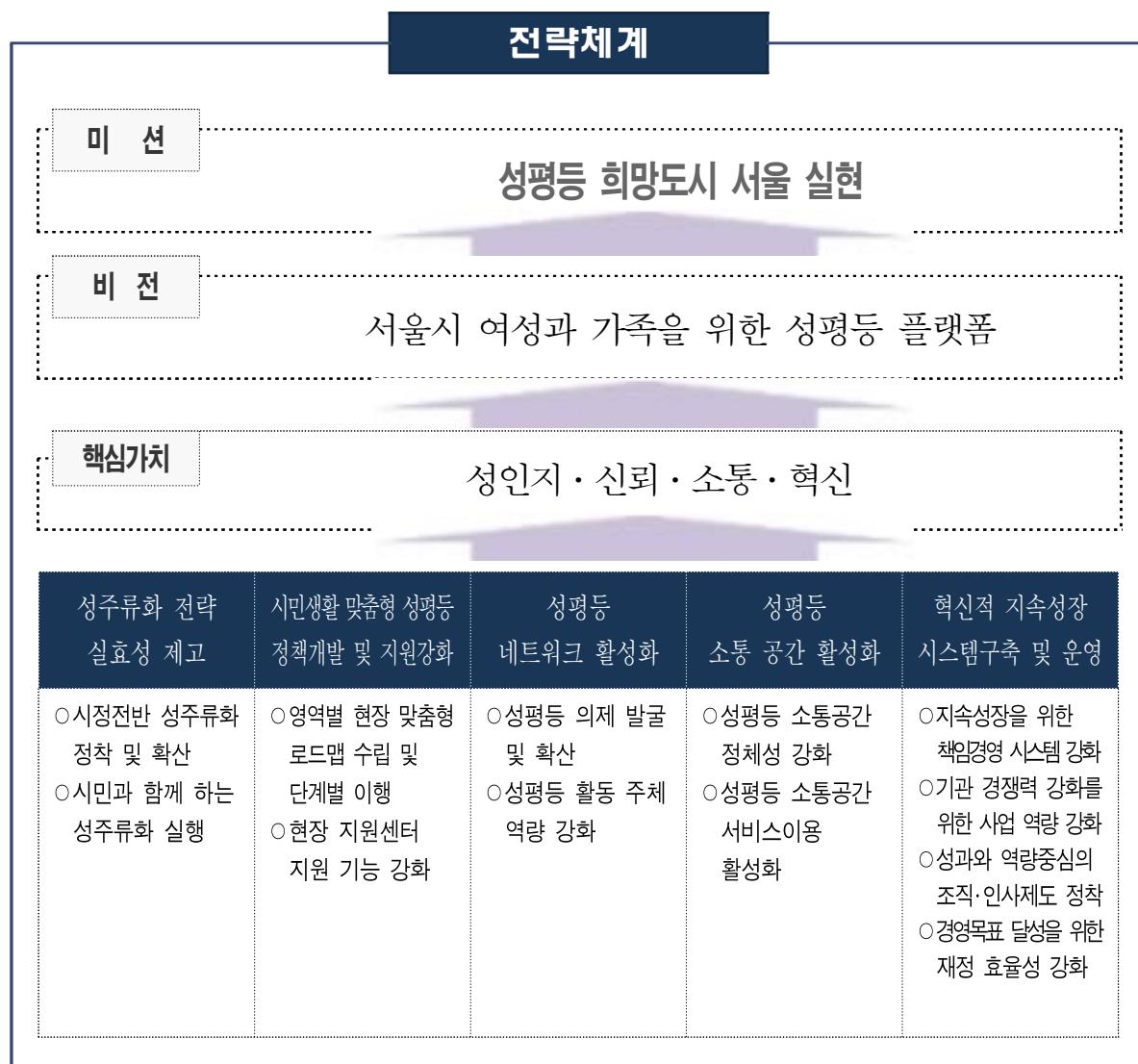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03호, 2018.1.4., 일부개정]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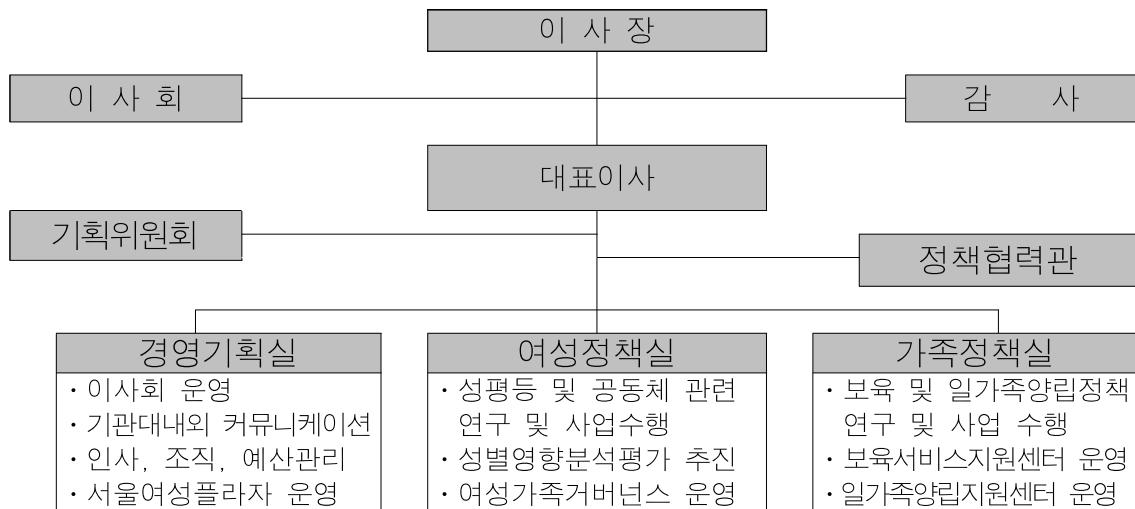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0.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 2018년 8월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제시한 기관 운영 미션과 비전체계 (<그림 1> 참조), 조직 및 인력(<그림 2>, <표 1> 참조), 주요시설 현황 (<표 2>, <표 3> 참조), 예산 현황(<표 4> 참조),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표 5> 참조)은 다음과 같음.

〈그림 1. 미션과 비전〉



〈그림 2. 조직 : 3실〉



〈표 1. 인력 : 정원 111명/ 현원 108명〉

구분	계	대표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정원	111	1	2	5	26	22	15	7	33
현원	108	1	0	3	25	19	13	14	33

* 2018.8.17. 기준

〈표 2. 시설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면적	대지 6,488m ² , 건축 연면적 22,519m ²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건립기간	1999. 11 ~ 2002. 6

〈표 3. 주요시설〉

구분	주요시설
대관공간	시청각실, 다목적실, 대식당, 세미나실, 회의실, 국제회의장, 아트홀 봄 등
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NGO 공간임대, 성평등 도서관 등
편의시설	시간제보육, 스포츠센터, 수영장, 주차장 등

〈표 4. 2018년 예산〉

- 수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비율)	2017(비율)	증감(증감율)
계	11,782(100%)	12,701(100%)	△919(△7.2%)
출연금	7,113(60.4%)	4,417(34.8%)	2,696(61.0%)
자체수입	4,669(39.6%)	8,284(65.2%)	△3,615(△43.6%)
사업운영수입	8(0.1%)	8(0.1%)	-
시설운영수입	1,967(16.7%)	4,262(33.5%)	△2,295(△53.8%)
기타수입	788(6.7%)	821(6.5%)	△33(△4.0%)
이월 잉여금	30(0.3%)	482(3.8%)	△452(△93.8%)
기본재산	927(7.9%)	1,608(12.7%)	△681(△42.4%)
대행사업수입	949(8.1%)	1,103(8.7%)	△154(△14.0%)

- 지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비율)	2017(비율)	증감(증감율)	비고
계	11,782 (100%)	12,701 (100%)	△919 (△7.2%)	
사업예산	4,839 (41.1%)	6,883 (54.2%)	△2,044 (△29.7%)	·현장맞춤형 여성정책개발 및 사업운영 ·현장맞춤형 가족정책개발 및 사업운영 ·공간운영 및 경영관리
일반관리비	6,943 (58.9%)	5,818 (45.8%)	1,125 (18.8%)	·행정운영경비 :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표 5.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성평등 전략 실효성 제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실적	2,207건	2,237건	2,892회
	성주류화 실행주체 역량강화	2,978명	3,407명	2,514명
	성주류화 거버넌스 운영	85개	90개	96개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 확산	7건	7건	7건
	일가족양립 진단 및 컨설팅	400건	525건	420건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노력	1,002건	1,101건	1,203건
	보육교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노력	1,039명	2,576명	2,322명
	돌봄 컨텐츠 개발	3건	2건	3건
	돌봄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상담	2,280건	2,466건	2,645건
	연구형 어린이집 운영	2개소	2개소	2개소
서울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단체 성장지원	25회	29회	32회
	시민과 함께하는 성평등의식 확산	10건	14건	16건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 확산 실적	11건	11건	12건
여성가족 소통공간 활성화	성평등도서관 여기 프로그램 운영	21회	23회	27회
	시간제 돌봄 지원	4,161명	4,933명	4,800명

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최근 5년 간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한 예산규모는 총 364억원으로, 한해 평균 53억 원(‘14년~18년, 5년 평균) 정도로, 재단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시 출연금의 비중은 평균 44%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비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14	10,878	4,690	43	△7
2015	12,389	4,890	39	4
2016	12,152	5,259	43	8
2017	12,970	4,417	34	△16
2018	11,782	7,113	60	61
총액	60,171	26,369	44	-
평균	12,034	5,274	44	-

-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¹⁾와 「여성가족재단조례」제13조(운영재원 등)²⁾ 및 제11조(기금 및 출연금)³⁾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바, 출연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하건데,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출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고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동 재단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며,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보면, 여성가족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성 평등 전문기관으로,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연구와 관련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또 서울시의 여성 및 가족, 보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재단 출연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여성가족재단은 2017년(2016년 실적) 서울시 출자·출연재단 경영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운영재원 등)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지정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운영 재원 등)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 사업수익금, 지정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제1항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표 7. 서울시 출연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17평가결과			'16.평가결과 (등급/점수)	'15평가결과 (등급/점수)
	순위	등급	점수		
평균	-	-	86.64점	85.39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	가	93.51점	나(89.05점)	나(89.05점)
서울문화재단	2	가	92.88점	나(88.21점)	나(88.21점)
서울산업진흥원	3	가	91.98점	가(91.20점)	가(91.20점)
서울관광마케팅(주)	4	가	91.26점	나(85.03점)	나(85.03점)
서울디자인재단	5	나	89.48점	가(90.12점)	가(90.12점)
서울연구원	6	나	88.12점	나(87.09점)	나(87.70점)
서울신용보증재단	7	나	85.21점	다(80.09점)	다(80.09점)
서울시복지재단	8	나	85.17점	다(84.37점)	다(84.37점)
서울장학재단	9	나	85.06점	다(80.04점)	다(80.04점)
세종문화회관	10	다	83.07점	다(83.84점)	다(83.84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11	다	80.19점	* '17년 최초 평가	
서울시립교향악단	12	라	73.78점	다(80.22점)	다(80.22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	※ 사단법인은 대상에서 제외	※ 사단법인은 대상에서 제외	다(84.82점)

4 종합검토 의견

- 이상 앞에서 검토한 바에 같이, 여성가족재단 출연을 위한 본 동의안은 법적·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인 ‘여성플라자’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조례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2항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 사업

-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가족 양립 문화 조성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보육, 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을 위한 역량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서울여성의 경제력 강화, 체감하는 성주류화, 여성안전과 사회통합, 서울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김진영 (☎ 2133-5031)